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보훈급여금등을 환수하는 경우 납부의무자가 매월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0000호, 2023. 00. 00. 공포, 2023. 7. 18.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분할납부 신청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금의 지급신청 근거를 명시하고, 생활지원금 지급신청서 등의 서식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3호 중 “행하는 사람임”을 “치른 사람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신청인”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신청인)으로,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주민등록표 등본의 내용을”을 “경우만 해당한다)과 신청인의 입금계좌 확인정보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확인예”를 “이에”로 한다.

제5조제2항 본문 중 “통해 주민등록표 등본의 내용을”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신청인이 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친족 중 재산상속인이 될 사람인 경우만 해당한다)과 신청인의 입금계좌 확인정보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확인예”를 “이에”로 한다.

제8조의2 및 제10조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생활안정을 위한 지원금의 지급 신청) ① 법 제14조의5제2항에 따라 지원금을 받으려는 사람(이하 “생활지원금 수급희망자”라 한다)은 별지 제4호의1서식의 생활지원금 지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본인 및 가구원에 대한 별지 제5호의1서식의 소득·재산 신고서 1통

2. 본인 및 가구원에 대한 별지 제6호서식의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1통
3.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이미 보관 중인 자료를 통하여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1통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생활지원금 수급희망자 및 가구원의 주민등록표 등본 등 별표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생활지원금 수급망자 또는 가구원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생활지원금 수급희망자에게 생활지원금 지급 여부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재산 등의 조사에 시간이 걸리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0조의5(환수금 분할납부 신청) 영 제37조제6항에 따라 환수금분할납부 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0호서식의 환수금 분할납부 신청서를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호의2서식, 별지 제5호의2서식 및 별지 제10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의5 개정규정은 2023년 7월 18일부터 시행한다.

[] 사망일시금

[] 미지급 보훈급여금

지급 신청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일	
보훈급여금을 지급받던 사람	대상구분			보훈번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휴대전화번호:)						
	구분			신상변동일			
		[]사망		[]행방불명			
신청인	보훈급여금을 지급받던 사람과의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휴대전화번호:)				
	금융기관명		신청인 명의의 계좌번호				
	보훈급여금 미지급기간		년 월부터		년 월까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2항·제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보훈청장
보훈지청장 귀하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신청인 제출서류	뒤쪽 참조	수수료 없음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신청인 제출서류	<사망일시금의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 (공통)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독립유공자에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신상 변동신고 시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보상금을 받고 있는 독립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 사망자와 생활을 같이 하고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독립유공자에우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 규정된 보상금 지급순위에 따른 유족이 없는 경우로, 같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친족 중 재산상속인이 될 사람으로서 주민등록표 등본(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장례를 치른 사람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통 「독립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3항에 따른 재산상속인이 될 사람도 없는 경우로서 장례를 행한 사람만 제출합니다. - 보상금을 받고 있는 독립유공자의 유족이 사망한 경우(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다른 유족이 없는 경우에만 지급) - 사망자와 생활을 같이 하고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독립유공자에우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에 따른 친족 중 재산상속인이 될 사람으로서 주민등록표 등본(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장례를 치른 사람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통 「독립유공자에우에 관한 법률」 제13조제3항에 따른 재산상속인이 될 사람도 없는 경우로서 장례를 행한 사람만 제출합니다. <미지급 보훈급여금의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 - 보훈급여금을 받을 사람이 사망한 경우 -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독립유공자에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신상 변동신고 시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사망자와 생활을 같이 하고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독립유공자에우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친족 중 재산상속인이 될 사람으로서 주민등록표 등본(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보훈급여금을 받을 사람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행방불명인 경우: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독립유공자에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신상 변동신고 시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주민등록표 등본(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주민등록표 등본 - 입금계좌 확인정보(예금통장 사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사망일시금 또는 미지급 보훈급여금 지급 신청과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위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항목의 행정정보에 대하여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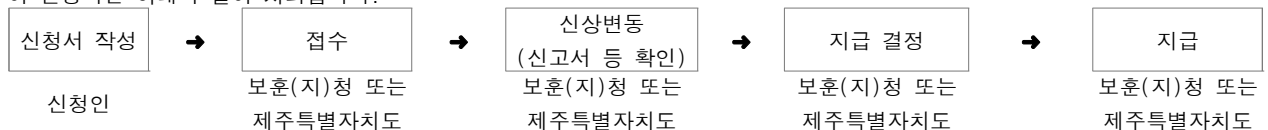
※ 만일,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하지 않거나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확인

담당	주무	과장	(지)청장
----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생활조정수당 지급 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	-----	------	-----

신청인	보훈번호	독립유공자와의 관계	성명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부양의무자 (부양의무가 있는 배우자, 부모, 자녀 및 그 배우자)	신청인과의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업	동거 여부
			-		
			-		
			-		
			-		
			-		
			-		
			-		
			-		

신청내용	
------	--

「독립유공자에우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생활조정수당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보훈청장
보훈지청장 귀하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신청인 제출서류	1. 소득·재산 신고서(부양의무자 포함) 2.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부양의무자 포함) 3.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이미 보관 중인 자료를 통하여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음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행정정보 공동이용	1.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2.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3.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증명서 4. 장애인증명서 5. 임야대장 6. 토지대장 7. 토지등기사항증명서 8. 개별공시지가확인서 9. 건축물대장 10. 건물등기사항증명서 11. 주택가격확인서 12. 선박원부 13. 자동차등록원부 14. 사업자등록증명 15. 임대사업자등록증 16. 휴업사실증명 17. 폐업사실증명 18. 소득금액증명 19. 납세사실증명 20. 납세증명서 21. 지방세세목별과세(납세)증명서 22. 공무원연금내역서 23. 산재보험급여지급확인원 24.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 25.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26. 자동차등록증 27. 차상위계층확인서 28. 장애인연금장애수당장애이동수당수급자확인서 29.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30. 자활근로자확인서 31. 임금계좌 확인정보(통장사본)
	본인정보 제공요구	32.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본인정보 제공 요구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 1.본인은 생활조정수당 지급신청과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위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항목의 행정정보에 대하여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을 경우 본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2.본인은 생활조정수당 지급신청과 관련하여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위의 본인 정보 제공요구 항목의 행정정보에 대하여 위의 민원처리기관으로 제공할 것을 요구하며, 민원처리기관의 담당자가 정보요구 대상 기관에서 제공하는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를 전자적으로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정보요구 대상기관 : 법원행정처)
※ 동의하지 않을 경우 본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양의무자

(서명 또는 인)

부양의무자

(서명 또는 인)

부양의무자

(서명 또는 인)

부양의무자

(서명 또는 인)

부양의무자

(서명 또는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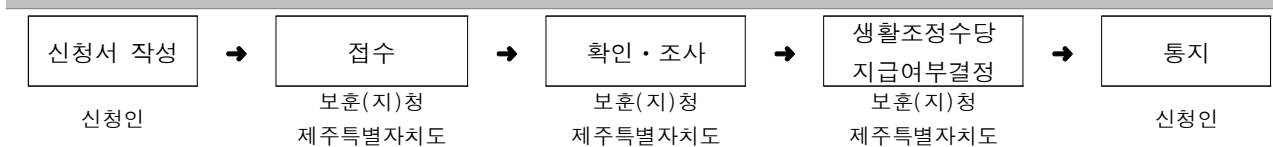
부양의무자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1. 국가보훈처장은 「독립유공자에우에 관한 법률」 제14조의3제3항에 따라 생활조정수당 수급희망자와 그 부양의무자가 지원여부의 결정에 필요한 서류 또는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조사·질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에는 생활조정수당 지급 신청을 각하하거나 생활조정수당 지급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2. 「독립유공자에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제3항에 따라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은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생활조정수당 지급 여부를 알려드립니다. 다만, 소득·재산 등의 조사에 시간이 걸리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3. 생활조정수당 수급희망자 및 그 부양의무자는 소득 및 재산사항을 성실히 신고하여야 합니다.

처리절차



확인

담당	주무	과장	(지)청장
----	----	----	-------

생활지원금 지급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30일		
신 청 인	보훈번호		독립유공자와의 관계		성명
	주소 (전화번호 :)				
	복지자격표시 (해당자만 체크)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
신 청 인 및 가 구 원 ¹⁾	신청인과의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업	동거 여부
	본 인		-		
	(배우자)		-		
	(자녀)		-		
			-		
			-		
			-		
			-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생활지원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보훈청장
보훈지청장 귀하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가구원

- 범 위 : 동일 세대 거주자(주민등록등본으로 확인)
* 다만, 배우자, 30세 미만의 세대가 달리되어 있는 미혼자녀, 단순 세대 분리자는 가구원에 포함

신청인 제출서류	1. 소득·재산 신고서(가구원 포함) 2.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가구원 포함) 3.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가구원 포함) 4.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이미 보관중인 자료를 통하여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 음
-------------	--	------------

확 인			
담당	주무	과장	(지)청장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행정정보 공동이용	1.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2.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3.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증명서 4. 장애인증명서 5. 임야대장 6. 토지대장 7. 토지등기사항증명서 8. 개별공시지가확인서 9. 건축물대장 10. 건물등기사항증명서 11. 주택가격확인서 12. 선박원부 13. 자동차등록원부 14. 사업자등록증명 15. 임대사업자등록증 16. 휴업사실증명 17. 폐업사실증명 18. 소득금액증명 19. 납세사실증명 20. 납세증명서 21. 지방세세목별과세(납세)증명서 22. 공무원연금내역서 23. 산재보험급여지급확인원 24.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 25.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26. 자동차등록증 27. 차상위계층확인서 28. 장애인연금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수급자확인서 29.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30. 자활근로자확인서 31. 임금계좌 확인정보(통장사본)
	본인정보 제공요구	32.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본인정보 제공 요구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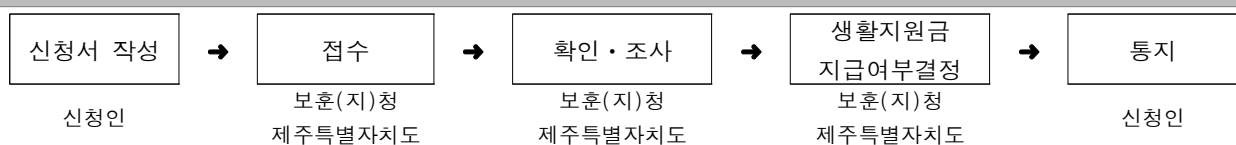
- 본인은 생활지원금 지급신청과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위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항목의 행정정보에 대하여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을 경우 본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인은 생활지원금 지급신청과 관련하여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위의 본인정보 제공요구 항목의 행정정보에 대하여 위의 민원처리기관으로 제공할 것을 요구하며, 민원처리기관의 담당자가 정보요구 대상기관에서 제공하는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를 전자적으로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정보요구 대상기관 : 법원행정처)
※ 동의하지 않을 경우 본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가구원	(서명 또는 인)
가구원	(서명 또는 인)
가구원	(서명 또는 인)
가구원	(서명 또는 인)
가구원	(서명 또는 인)
가구원	(서명 또는 인)
가구원	(서명 또는 인)

유의 사항

- 「독립유공자에우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에 따라 지원 여부의 결정에 필요한 서류 또는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조사·질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에는 생활지원금 지급 신청을 각하하거나 지급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 생활지원금 수급희망자 및 그 가구원은 소득 및 재산사항을 성실히 신고하여야 합니다.

처리 절차



소득·재산 신고서(해당사항 있을 경우만 작성)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하며,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성명						
소득사항	보훈급여금 등 (간호·조정수당 제외)		담당 공무원 기재			
	재산소득	임대소득	원	원	원	원
		이자소득	자산 조회결과 적용			
		연금소득	금융재산 조회결과 적용			
	근로소득	상시근로	원	원	원	원
		일용근로	원	원	원	원
	사업소득	농업소득 (주재배작물명)	() 원	() 원	() 원	() 원
		임업소득	원	원	원	원
		어업소득	원	원	원	원
		기타(자영업)	원	원	원	원
	기타소득	사적이전소득 (무료임대)	원	원	원	원
		공적이전소득*	자산 조회결과 적용			
		기타 (지방자치단체지원금 등)	원	원	원	원
	재산사항	건축물 (주택, 건물, 시설물)		자산 조회결과 적용		토지
선 박		자산 조회결과 적용		임목재산	자산 조회결과 적용	
항공기		자산 조회결과 적용		어업권	자산 조회결과 적용	
자동차		차량명(), 용도 [] 생업용 [] 보철용 [] 자가용				
임차보증금		전·월세보증금(백만원), 상가보증금(백만원), 기타(백만원)				
금융재산		금융재산 조회결과 적용				
동 산		소(마리, 원), 돼지(마리, 원)		분양권		원
	기타가축(마리, 원), 종묘(원)		조합원입주권		원	
	기계·기구류(원), 기타(원)		회원권		자산 조회결과 적용	
부채	금융기관 대출금		금융재산 조회결과 적용		금융기관 외 기관 대출금	원
	임대보증금		원			
	공증사채		판결문, 화해, 조정조서에 의한 사채(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생활지원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신고인은 신청인 본인 성함과 서명 부탁드립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지방보훈청장
보훈지청장 귀하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공적이전소득"이란 법령 등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 및 그 밖의 금품을 말합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환수금 분할납부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대상구분	보훈번호			
	독립유공자와의 관계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환수금 분할 신청 내용	총 환수금액 원	일시납부 금액 원	분할납부 신청 금액 원	분할납부 횟수 회	월 납입일 일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6항 각 호 외의 후단 부분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5에 따라 환수금의 분할 납부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보훈청장 보훈지청장 귀하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

1. 작성방법

가. 환수금 분할신청 내용의 ①총 환수금액란에는 현재 남아 있는 금액, ②일시납부 금액란에는 현재 한꺼번에 납부할 수 있는 금액, ③분할납부 신청 금액란에는 분할납부 희망하는 금액을 기재합니다. (①총 환수금액 = ②일시납부 금액 + ③분할납부 신청 금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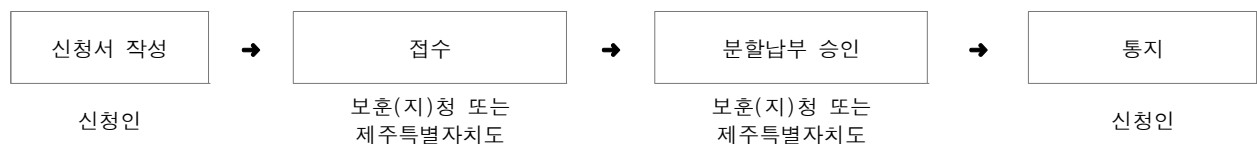
나. 환수금 분할 신청내용의 분할납부 횟수란에는 아래의 기준을 참고하여 희망하는 분할 횟수를 기재합니다.

- 반납해야 할 금액이 ①1천만원 미만인 경우: 20회 이내, ②1천만원 이상 2천만원 미만인 경우: 40회 이내, ③2천만원 이상인 경우: 60회 이내

2. 유의사항: 분할납부를 승인받은 후 분할납부금을 3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에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8항에 따라 분할납부 승인을 취소하고, 환수금과 연체이자를 한꺼번에 환수할 수 있습니다.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확인

담당	주무	과장	(지)청장
----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사망일시금 지급신청) ① 영 제8조제2항에 따라 사망일시 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사망일시금 지급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 하여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 게 제출해야 한다.	제4조(사망일시금 지급신청) ① - ----- ----- ----- ----- ----- ----- ----- -----.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3. 장례를 행하는 사람임을 증 명할 수 있는 서류(법 제13조 제3항에 따른 장례를 행하는 사람만 해당한다) 1통	3. ---- <u>치른 사람임</u> ----- ----- -----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은 <u>신청 인이 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 에 따른 친족 중 재산상속인이 될 사람인 경우에는 「전자정부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 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주민등 록표 등본의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 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u>	② ----- ----- 「 <u>전 자정부법</u> 」 제36조제1항에 따 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 여 주민등록표 등본(신청인--- ----- <u>경우만 해당한다</u>)과 <u>신청인의 입금계좌 확인정보를</u> ----- ---. ----- <u>이에</u> ----- -----

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제5조(미지급 보훈급여금 지급신청)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주민등록표 등본의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신 설>

-----.

제5조(미지급 보훈급여금 지급신청) ① (현행과 같음)

② -----

-----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신청인이 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친족 중 재산상속인이 될 사람인 경우만 해당한다)과 신청인의 입금계좌 확인정보를 ---. --- 이에 ---.

제8조의2(생활안정을 위한 지원금의 지급 신청) ① 법 제14조의5 제2항에 따라 지원금을 받으려는 사람(이하 “생활지원금 수급 희망자”라 한다)은 별지 제4호의1서식의 생활지원금 지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본인 및 가구원에 대한 별지 제5호의1서식의 소득·재산 신고서 1통
2. 본인 및 가구원에 대한 별지

제6호서식의 금융정보 등 제
공 동의서 1통

3.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
명서(이미 보관 중인 자료를
통하여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1통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은 「전
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
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
여 생활지원금 수급희망자 및
가구원의 주민등록표 등본 등
별표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
다. 다만, 생활지원금 수급망자
또는 가구원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은 제
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날부
터 30일 이내에 생활지원금 수
급희망자에게 생활지원금 지급
여부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재산 등의 조
사에 시간이 걸리는 등 불가피
한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 설>

제10조의5(환수금 분할납부 신청)

영 제37조제6항에 따라 환수금
분할납부 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0호서식의 환수금 분할
납부 신청서를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